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등〉

■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5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등	6
2.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 강화	12
3. 재결서에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 명시	19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9인
2. 제안일 : 2026. 4. 15.
3. 회부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써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각각 강화하고(안 제7조), ②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
심판이 청구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안내하고(안 제21조제3항
신설),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재결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안 제4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며, ③재결서에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포함
(안 제46조제2항제7호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u>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u> -----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 ⑦ (생략)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② (생략)

<신설>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생략)

-----.
-----.

④ -----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및 안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③ (생략)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

⑤ (생략)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
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
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
다. <후단 신설>

<신설>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재결 참여 위원 명단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제21조 제3항에 따라 행정
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받은 경
우도 같다.

⑦ 제6항의 경우 해당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등(안 제7조)

□ 현행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을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하도록 하되,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¹⁾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있음.²⁾

□ 그런데, 처분청의 상급관청의 공무원인 행정기관의 단체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1)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2)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독립성과 행정심판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변호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 행정심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변호사·교수 이상·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 등의 경력 요건에
더하여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요건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

[표 1] 현행법과 개정안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비교

구분		현행법	개정안		
위원장	원칙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행정청	좌동		
	재량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 +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		
민간위원		변호사 자격 + 5년 이상 실무 경험	좌동	+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교수 이상 재직 경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재직			
		박사학위 + 5년 이상 근무 경험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삭제)		

3)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2026. 2. 25.) 자료집 p.11.-12. 등 참조.

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민간 위원장 자격 강화

- 법관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사법절차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다년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등 사법절차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원장은 모든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여하게 되고, 법관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법적 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심리·재결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 행정청이 아닌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것을 재량으로 하고 있고, 현행법체계에서도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

□ 또한,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통상 해당 지역을 소재로 활동하는 법조인 등을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는데, 10년 이상의 법관 경력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고려할 때,⁵⁾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간 위원장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민간 위원장 자격 강화와 함께 행정심판 위원의 자격 또한 강화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 근무 경력 10년 이상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없어⁶⁾ 두 조건을 모두 갖춰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임.

4) 개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정하는 부분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개정안과 같이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위원을 반드시 위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5)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형사재판부 또는 민사재판부에서만 근무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민간 위원장의 법적 전문성 제고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으로 기존 경력 요건에 더하여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행정 분야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조교수 이상, 공무원 재직, 박사학위 등 특정한 경력 요건이 없더라도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훈·의료·교육 등의 분야는 변호사 자격, 박사학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문가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적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들의 행정심판위원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박사학위 또는 교수 경력이 없더라도 우수한 경력을 지닌 의료 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훈·의료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중 학교 현장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임.⁷⁾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실무인력을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 심리의 전문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예를 들어, 교육부장, 유초등교육과장 등은 장학관(교육전문직) 직급으로, 일반공무원과 별도의 직급체계를 지니고 있어 개정안에 따를 경우 행정심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됨.

2.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 강화(안 제21조 및 제49조)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실의 안내(안 제21조)

□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 중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심판 참가는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행정심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참가를 하거나,⁸⁾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행정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 그런데, 현행법은 처분 등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게 그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8)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正本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 「행정심판법」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행정심판 참가의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¹⁰⁾¹¹⁾

□ 이에, 개정안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안내하게 함으로써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행정심판 참가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해관계인의 행정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심리절차에 참여하여 주장·입증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심리의 적정성을 기하며 제3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제3자에 대한 통지 또는 안내를 위해서는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범위나 주소·연락처 등을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심판청구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인근

10)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2026. 2. 25.) 자료집 p.10. 등 참조.

11) 행정심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는 재결의 형성력에 따라 권리·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따라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를 포함하므로,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심판청구사건에서 환경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의 경우 그 행정심판사건에 참가할 이해관계가 있음(「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p.303.).

주민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위원회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들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심판청구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고지¹²⁾와 관련하여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나 주소 등을 조사·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³⁾¹⁴⁾

- 한편, 개별적 안내가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안내하기 위하여 고시·공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12)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13) 「주해 행정심판법」, 이원, 2020, p.502.

14) 같은 취지에서,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행정절차의 참여, 행정소송의 참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시·공고 등의 방법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신장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통지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 범위의 모호함, 통지를 위한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부재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통지 절차 누락 시에는 재결 고유의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분쟁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도 이해관계인 범위 특정 어려움, 통지를 위한 연락처 부재, 통지 의무 이행을 위한 심판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실 등 안내(안 제49조)

□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참가인에게 그 재결서 등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나,¹⁵⁾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나 그 행정심판에 참가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15)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앞선 가.항(p.12-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범위 특정 및 고지를 위한 연락처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제3자가 재결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인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있음.¹⁶⁾

따라서, 개정안 중 심판청구된 거부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

1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부분(안 제49조제7항 신설)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과 함께, 해당 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¹⁷⁾의 심사 경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거부처분의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통일부는 거부처분 등에 대한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분쟁을 종국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후속처분과의 법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그 밖에,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처분청이 행정심판의 결과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결과는 처분청의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으므로,

만일 개정안이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과도 이해관계인에게

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46호)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2026. 4. 16.)되어 계류 중

고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를 그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처분청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고 있지 않은데,

취소재결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하려는 관련 개정안¹⁸⁾에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그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지 제도를 규정하려는 동 개정안에도 현재 심리 중인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적용례)을 두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인용재결의 불복 수단 등을 안내하려는 것이나, 거부처분 인용재결 등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재송체계 정합성 문제, 소송경제 측면에서의 부적절함, 제소기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8346호)

3. 재결서에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 명시(안 제46조제2항제7호 신설)

- 현행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그 재결서의 기재사항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¹⁹⁾
- 그런데, 법원의 판결서에는 판결을 한 법관의 이름이 기재되는 데 반해²⁰⁾ 행정심판의 재결서에는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행정심판 위원의 책임성을 약화하고 재결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¹⁾
- 이에, 개정안은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결서에

19) 「행정심판법」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0)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③ (생략)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1)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2026. 2. 25.) 자료집 p.11.-12. 등 참조.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재결에 참여한 위원이 공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재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심판 심리 · 재결 업무수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수행하는 행정심판의 심리 · 재결은 공적 업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²²⁾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재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²³⁾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3)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심리가 종결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했던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게 됨.

□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제척사유 없는 위원들로 적법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심리가 종결된 행정심판의 재결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명단을 공개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²⁴⁾는 법관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미 심리가 종결된 심판청구사건이라도 그 심리·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향후 사건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저하,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 공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과 달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위촉직으로 그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미 심리가 종결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으로는 대전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1090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 구합 84925 판결 등.

24)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수가 지역에 소재한 변호사 또는 의사 등으로 사무실 주소·전화번호 등이 공개되어 있어,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해당 위원들에게 관련된 민원과 불만이 직접 전달될 우려가 상당하여 향후 다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참여 및 위촉 기피 등으로 이어져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자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이므로, 그 재결에 관한 책임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개별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 위원 개인에 대한 책임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²⁵⁾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등의 이익과 함께 그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위원들의 자율성 제약 가능성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실무 의견 등을 종합적

25)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결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위원의 책임성과 재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게 항의성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